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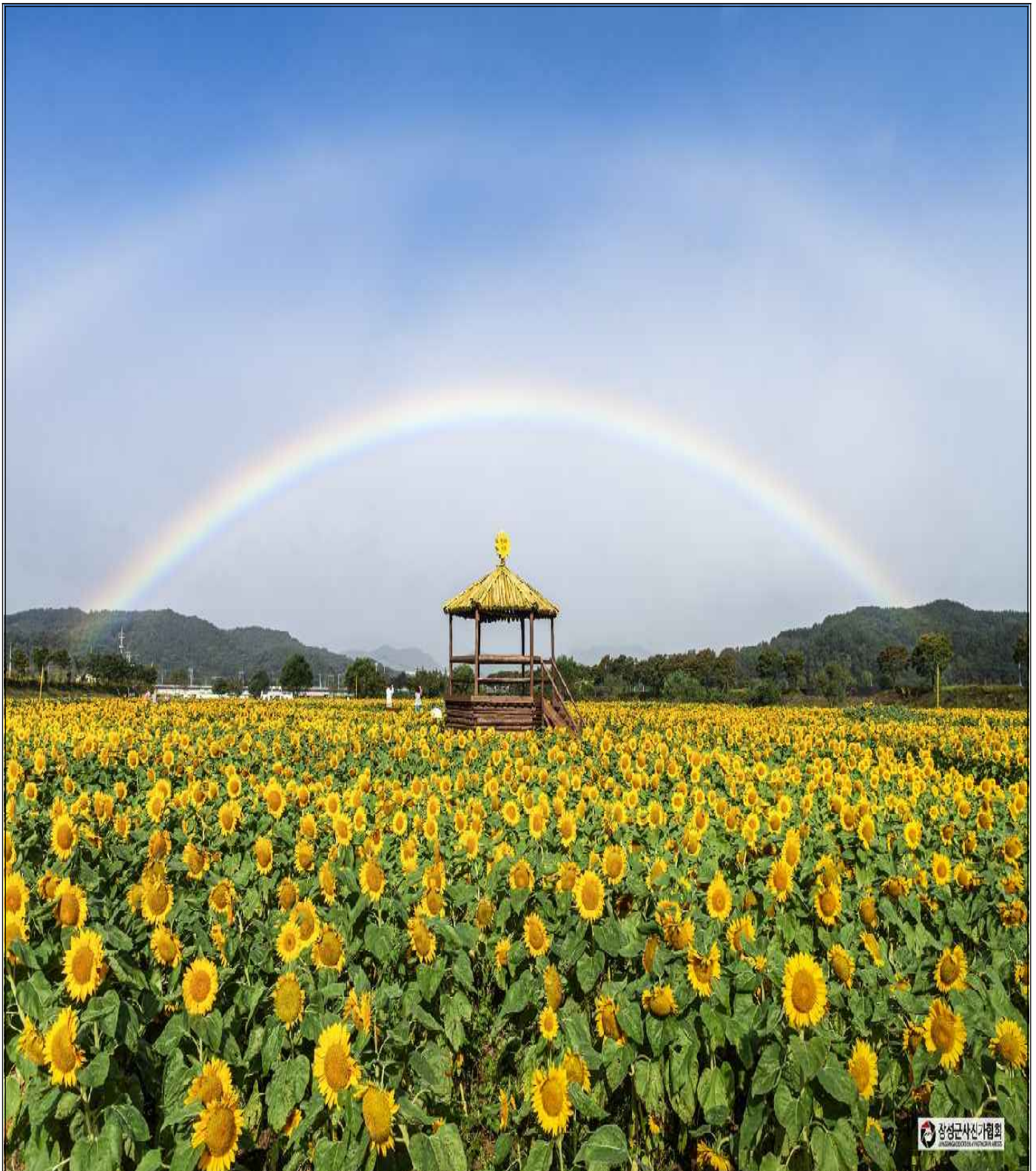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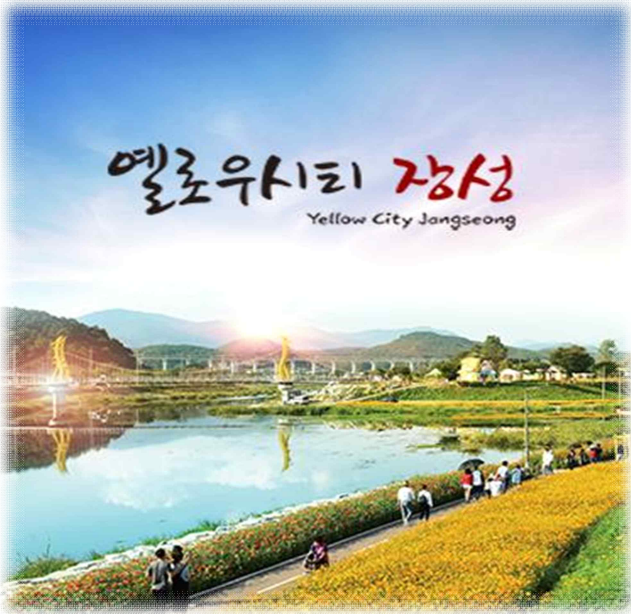
백양골 소식

2019년
10월

■ 제 496호 ■

발행인:장성군수/편집인:총무과장/제작:총무과/☎ 390-7231/FAX 390-7579/jangseong.go.kr/2019.10.22.(화)





[일반행정 소식] ----- 1

1.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2.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안내
3. 도로명주소 조금만 알면 정~말 편리해요
4.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
5.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안내
6.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보건·복지 소식] ----- 8

1. 2019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2. 2019년 암관리사업
3.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개안수술 지원
4. 진드기매개 감염병 증상과 예방 수칙
5. 올바른 손씻기 6단계
6.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농·축산 소식] ----- 2

1.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

[유관기관 소식] ----- 14

1.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2.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장에 관한 안내
4.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5. 정치후원금 기부, 왜 필요할까?

[국도정 소식] ----- 18

1. 기업과 청년이 함께 채우는 든든한 내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 (놀이활동 및 어린이집 등·하원 보조 등)

□ 사업개요

- 정 의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납부하는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시간제(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 7세 이하 아동
 -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할 것
 - ※ 지원제외 : 종일제돌봄, 시간제(종합형)돌봄, 만8세 이상 ~ 만12세 이하 시간제돌봄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 소득 유형별로 차등 지원(40~100%)

서비스유형	소 득 기 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 원 율	비 고
가형	75%(3,460천원 이하)	100%	
나형	120%(5,536천원 이하)	60%	
다형	150%(6,920천원 이하)	50%	
라형	150%초과(6,920천원 초과)	40%	
다자녀(셋째이상)	소득기준 무관	100%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양육공백 증빙서류
-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활동 시 아이돌봄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390-7411 (주민복지과 여성친화담당)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안내

□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란 ?

- 인·허가 등 복합민원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담일 및 장소를 예약하는 제도
- 운영방법
 - 예약 접수 : 민원인이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
 - 민원인 상담 :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관련부서 담당자와 상담

문의처 ☎ 061)390-7243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유의사항

□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출하 품종 < 새일미, 신동진 >

-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
- 건조벼 출하 시 수분함량은 13.0 ~ 15.0% 로 건조된 벼만 매입
 - 13.0% 미만의 벼를 출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출하 시 대형포대(톤백 800kg) 사용 권장

- 대형 포대 사용 시 검사 일정 단축으로 농가 편의성 향상 및 포장재 구입비 절감

구 분	대형포대(800kg)	소형포대(40kg)	비 고
포장재 구입비 절감	10,000원	14,000원 (700원/40kg×20매)	4,000원 절감
검사일정 단축	200~500톤/일	100~120톤/일	농가 편의성 향상

※ 공공비축미곡 출하 시 사용 포대는 포대파손 및 낙곡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새 포장재 사용
문의처 ☎ 390-8445 (농식품유통과), 394-6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도로명주소 조금만 알면 정~말 편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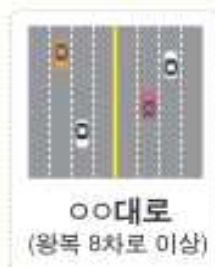
□ 도로명주소란 ?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입니다.

01

도로명은!

지명, 역사, 기존도로명 등의 주된 명사에 도로별 구분기준인 대로, 로, 길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02

건물번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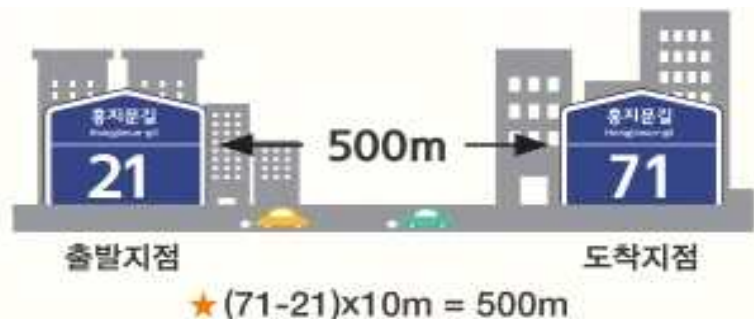
도로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합니다.



03

건물까지 거리는!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서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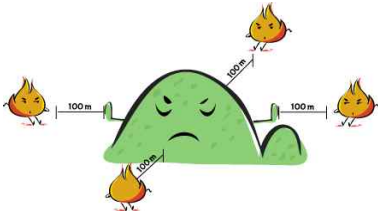


문의처 ☎ 390-7260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 예방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
- 영농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퇴비로 활용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음
-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등은 산불의 중요한 원인
- ※ 매년 120여건의 소각산불 발생(산불 원인의 31% 차지)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54명 사상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 사망(39명)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자
- ※ 산불로 확산될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대 혼자 진화하면 안됨



- 산불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농사를 위한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 390-7425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안내

□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위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 현충원에 모시고 있는 국가적 호국 보훈사업임

□ 사업내용

구 분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대 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경찰, 도병, UN군 유해
참여 및 제보방법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동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 전화신청 : 1577-5625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	- 6.25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매장, 목격 또는 들은 내용 - 군복무시절 전사자 유해, 유품을 목격했거나 들은 내용 - 일상활동(영농, 등산, 약초채취등) 및 각종 공사간 전사자 추정 유해, 유품을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내용
준비서류	- 제적등본, 유족증서본,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사본 (택일)	-
참여시 혜택	-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지급 - 포상금 지급 : 최대 1,000만원 이하	- 포상금 지급 : 최대 70만원

문의처 ☎ 390-7239 (총무과 대외협력담당)

☎ 390-7317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내

□ 올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019. 11. 14.(목), 전국 86개 시험지구의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수능은 매년 60만 명에 가까운 지원자가 응시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시험으로, 시험 당일 수험생 입실시간에는 시험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거나 입실하지 못하는 등의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출근시간 조정, 택시 부제 해제 등 협조 요청 예정

○ 영어영역의 듣기평가 시간(13:10 ~ 13:35, 25분간)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에서 경음기 사용 소음, 공사장 소음, 각종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학생이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므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무효화되어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험생들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여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전날 배포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험 도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시험 시간 ※ 시험실 입실시간은 8시 10분까지임

교시	시 험 영 역	시 간
1	국 어	08 : 40 ~ 10 : 00 (80분)
2	수 학	10 : 30 ~ 12 : 10 (100분)
3	영 어	13 : 10 ~ 14 : 20 (70분) (듣기평가 13 : 10 ~ 13 : 35, 25분간)
4	한국사, 사회 / 과학 / 직업탐구	14 : 50 ~ 16 : 32 (102분)
5	제2외국어 / 한문	17 : 00 ~ 17 : 40 (40분)

※ 시험편의제공대상자(5교시 종료시간) : 중증시각장애(21:43), 경증시각장애·운동장애(20:20)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산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 금지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통산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고 시침,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산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산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2019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대상별 일정

구 분	대 상	기 간	비고
병·의원	• 생후 6개월~만12세 어린이	처음 접종자 '19. 9. 17.(화) ~ '20. 4. 30.(목)	무료
	매년 접종자	'19. 10. 15.(화) ~ '20. 4. 30.(목)	
	• 만65세 이상 어르신	'19. 10. 15.(화) ~ '19. 11. 22.(금)	
	• 임신부	'19. 10. 15.(화) ~ '20. 4. 30.(목)	
보건소 보건지소	• 생후 6개월~만12세 어린이	'19. 10. 22.(화) ~ 백신 소진시까지	무료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만50~64세 이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만50~64세 이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귀농인 등	'19. 10. 28.(월) ~ 백신 소진시까지	유료 (7,600)
	• 관내 희망 주민	'19. 10. 28.(월) ~ 백신 소진시까지	

□ 무료접종 병·의원 현황

구 분	의료기관	연락처	비고	의료기관	연락처	비고
만65세 이상 어르신 (54.12.31. 이전출생)	장 성 병 원	399-9000	장성읍	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읍
	장성혜원병원	399-3000		하 하 호 호 마취통증의학과	392-0077	
	장성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395-1170		한 솔 의 원	395-2290	
	기 독 의 원	393-3403		황 룡 의 원	392-7599	황룡면
	박 상 선 내 과	392-7997		백양요양병원	930-5000	삼계면
	백이비인후과	393-8250		세브란스의원	393-7582	
	연세연합의원	395-4300		중 앙 의 원	394-7273	
	열 린 의 원	394-5003		푸 른 의 원	394-8262	북이면
	에은가정의학과	395-2600		성 심 의 원	392-1019	
	전대가정의원	393-8528				
어린이 (07. 1. 1 ~ 19. 8. 31)	장성혜원병원	399-3000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전대가정의원	393-8528		중 앙 의 원	394-7273	
	백이비인후과	393-8250		푸 른 의 원	394-8262	
	한 솔 의 원	395-2290				
임신부	중앙내과의원	392-8575	장성읍	세브란스의원	393-7582	삼계면
	한 솔 의 원	395-2290		중 앙 의 원	394-7273	
				푸 른 의 원	394-8262	

문의처 ☎ 390-8332, 8337 (장성군 보건소)

2019년 암 관리 사업

□ 국가암 무료 검진사업 (2019. 8.부터 폐암검진 추가)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 검진기관 : 장성병원, 해원병원, 중앙내과, 기독의원 등 검진지정 병·의원

구 분	대 상 자	검진주기	검사항목	비 고
위 암	만40세 이상	2년	위장조영검사 및 위 내시경 검사	홀수년도 출생자
대 장 암	만50세 이상	1년	대 변 검 사	검사결과 양성소견자 대장내시경 검사
유 방 암	만40세 이상	2년	유 방 촬 영 술	홀수년도 출생자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 암	만40세 이상 고 위 험 군	6개월	간초음파+혈액검사	고 위 험 군
폐 암	만54세~74세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자	2년	저선량 흉부 CT	고 위 험 군

※ 해당년도 수검완료시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되므로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소 아 암 환 자	성 인 암 환 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 암 환 자
지원 암종	전 체 암 종	전 체 암 종	국가 5대 암종 (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암)	원발성 폐암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분배조사	당 연 선 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건강보험 기준적합자
지원 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백혈병 : 3,000만원까지 백혈병 이외: 2,000만원까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까지

- 검진대상 : 직장가입자 96,000원,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390-8341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노인 무릎인공관절 및 개안수술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1인 양쪽지원가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자)
-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로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개안수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연령제한없음
- 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증명서(해당자)
-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로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

문의처 ☎ 390-8340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진드기 매개감염병 증상과 예방 수칙

※진드기매개감염병 :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

□ 진드기 서식처는 어디인가요?

-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이로 인한 질병이 다수 발생합니다.

□ 특히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장소가 있나요?

- 등산 등 야외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4~11월에 환자가 발생합니다.

□ 야외활동 중, 혹은 귀가 후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진드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귀가 후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면 일부 도움이 되나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 원인불명의 발열과 식욕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입니다.
그러나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 확진검사를 통해 구별이 가능합니다.

□ 만약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린 뒤 잠복기인 6~14일 이내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390-8310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올바른 손 씻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 올바른 손 씻기 수칙 준수로 많은 감염병 예방 가능

- 장관감염증(장티푸스, A형간염, 세균성이질 등)
- 호흡기감염증(인플루엔자, 감기 등)

○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아 있음



□ 올바른 손 씻기 수칙

- 손 씻을 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6단계 준수)

○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문의처 ☎ 390-8310 (보건소 감염병대응담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이 알고싶다



농림축산식품부

Q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일반 국민, 축산관계자의
행동요령은 무엇인가요?

Q: 일반 국민의 행동요령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확인하시어
해당 국가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 가공품, 냉 장 생동 돼지고기와 만두, 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자진 신고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야생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기관
(가까운 사군 환경부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Q: 축산관계자의 행동요령은?

축산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여 주세요.

??

해외여행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을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시
공항에서 소독을 받고 최소 5일 이상 농장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장주는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가축, 분노,
동물약품, 사료 운반 등)에 대해 농장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차단방역 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농장주는 매일 가축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번호 : 1588-9060,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18.01.01.부터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재해의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 재해율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 출퇴근재해가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가능하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중이더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개월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소득 251만원('19년 기준) 이하인 노동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채불생계비, 소액생계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문의처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 2019. 9. 26. ~ 2020. 3. 28.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2020. 3. 24.(화) ~ 3. 28.(토)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

-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문의처 ☎ 394-1390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문의처 ☎ 394-1390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 기부, 왜 필요할까?



깨끗한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정치후원금 기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10월 국정홍보만화(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기업과 청년이 함께 채우는 든든한 내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만기금 수령 시 기업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감면

